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

전문개정 2012. 12.
 개정 2013. 1.
 개정 2014. 9.
 개정 2014. 11.
 개정 2018. 7.
 개정 2019. 11.
 개정 2020. 9.
 개정 2021. 8.
 개정 2021. 9.
 개정 2022. 6.
 개정 2023. 2.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업무에 대한 총장의 결재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 처리의 신속과 능률을 기하고 각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교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대신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4조 (중요사항) 본 규정에 규정된 위임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 통상 업무가 아닌 특수 업무사항 등은 구두 또는 문서로 총장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제5조 (협조) 본 규정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타 부서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결권한의 대행)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그 전결권자의 차하위 직위자가 대행한다.

제7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효력) 본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각 부서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되어온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은 이를 모두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